#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민홍철・이재강・문대림

이연희 · 한준호 · 이언주

한정애・조 국・이건태

정준호 · 백혜련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법률 제 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를 "안내,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접견 지원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보호에 대한 지원)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		
	인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u>다</u> .		
<u>&lt;신 설&gt;</u>	④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미		
	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u>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u>안내 및 제2</u>	<u>⑤</u> 안내, 제2항에		
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		
<u>의 방법·절차</u> , 그 밖에 필요한	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접견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지원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		
	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